

2013
지방체육업무편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목 차

I. 생활체육 진흥	1
1.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
1.1 사업개요	1
1.2 추진방향	1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
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1
2.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7
2.1 사업개요	7
2.2 스포츠강사 운영개요	7
2.3 추진체계	8
2.4 연차별 스포츠강사 배치 계획	8
2.5 협조사항	8
3.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9
3.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9
3.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10
3.3 시·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1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12
4.1 추진방향	12
4.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13
4.3 협조사항	13
5.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14
5.1 목적	14
5.2 추진방향	14
5.3 캠페인 전개 방법	14
5.4 협조사항	15
6.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	16
6.1 사업목적	16
6.2 추진방침	16
6.3 사업내용	16
6.4 사업추진절차	16
6.5 협조사항	17
7.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18
7.1 행사개요	18
7.2 추진방향	18
7.3 행사 주요내용	18
7.4 시·도별 조치사항	19

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0
8.1 사업개요	20
8.2 추진방향	20
8.3 협조 및 조치사항	20
9. 전통스포츠 보급	21
9.1 사업개요	21
9.2 협조 및 조치사항	21
10.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장애인/비장애인 통합대회)	22
10.1 사업목적	22
10.2 추진방향	22
10.3 추진방침	22
10.4 사업내용	22
10.5 협조사항	22
11. 체육 유공자 포상	23
11.1 포상개요	23
11.2 대한민국체육상	23
11.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24
12. 생활체육예산 확보 및 집행	25
12.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25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26
13.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27
13.1 근거법령	27
13.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27
13.3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28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30
14.1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절차	30
14.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설명회 개최	32
14.3 2013년 소요예산	32
14.4 사업주체별 기능분담	32
14.5 2013년 개편 내용	33
II.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34
1.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34
2. 주요추진 방향	35
3. 공공체육시설 신규확충 및 리모델링	36
3.1 체육진흥시설 관련 법령	36
3.2 체육진흥시설 지원	38
3.3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40
3.4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41

3.5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46
4.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집행지침	56
4.1 예산조기집행	56
4.2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56
4.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56
5.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57
5.1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57
5.2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59
5.3 공공체육시설 이용관련 사항	59
5.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	60
6.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	61
III. 직장체육 진흥	91
1. 직장체육의 활성화	91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91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91
1.3 행정사항	91
IV. 전문체육 육성	97
1. 전국체육대회	97
1.1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97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98
2.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99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
3.1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00
3.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101
3.3 201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102
V. 스포츠산업 육성	103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103
2. 제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104
3. 스포츠산업진흥 포럼 개최	105
4. 스포츠관광 및 스포츠이벤트의 내실화	105
VI.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 강화	106

1. 목 적	106
2. 도핑 검사 개요	106
3. 도핑방지 교육 개요	107
4. 도핑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108
5. 도핑방지 국제교류	109
6.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	109
VII. 행 정 사 항	110
1. 지방체육업무편람의 적용범위	110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111
2.1 지방비 확보	111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111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집행	112
3. 행사 시행 시 유의사항	113
4.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113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114
6. 2012 체육백서 발간	115

< 별지 서식 목차 >

1. (제 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3
2. (제 2호 서식) 201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4
3. (제 3호 서식) 2013년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5
4. (제 4호 서식)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실적자료 보고	6
5. (제 5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64
6. (제 5-1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65
7. (제 6호 서식) 공사 준공(사업 실적) 보고서	67
8. (제 7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71
9. (제 8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72
10. (제 9호 서식)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74
11. (제10호 서식)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75
12. (제11호 서식) 2014년도 체육진흥시설 내역사업 설명자료	83
13. (제12호 서식) 2014년도 전국체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총괄	86
14. (제13호 서식) 직장체육 현황보고	92

I.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1 사업개요

-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청소년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호인 조직 결성을 권장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주민복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예산으로 추진 및 지자체에 배치된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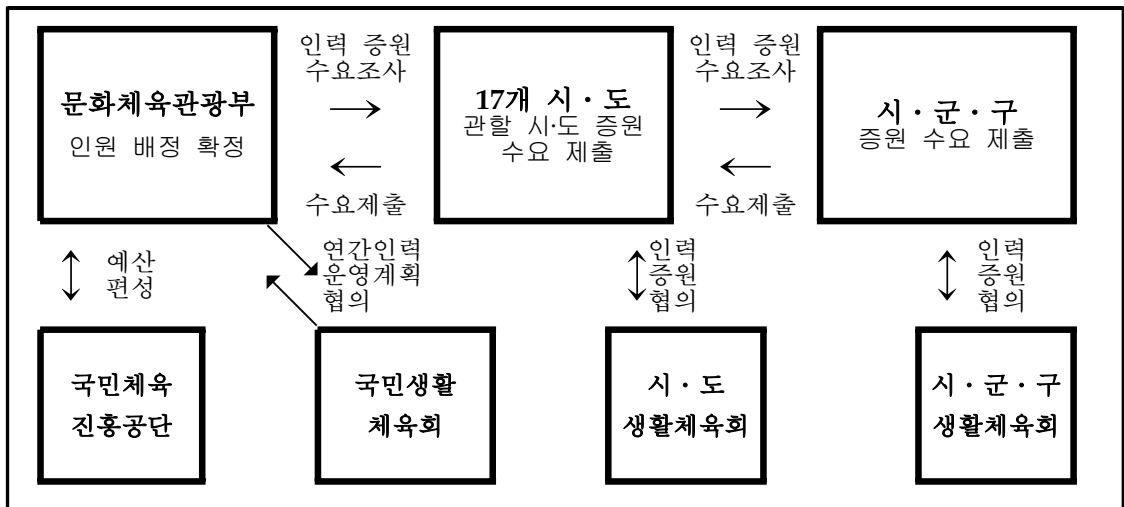
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국민생활체육회
- 기준보조율 :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 사업내용 : 일반 및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시·도 및 종목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2013년 생활체육지도자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2월
 - 기금사업비 : 27,464백만원(지방비 매칭 5:5)
 - 사업규모 : 지도자 2,230명 배치 지원(일반지도자 1,400명, 어르신 지도자 830명)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및 교육
 -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채용·근무
 - * 생활체육지도자 지역별 배치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확정

- 실적보고(분기보고) : 익월 20일 이내 (1.20, 4.20, 7.20, 10.20)
 -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은 (별지 4호) 양식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배정 절차》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1. 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기금사용자
- 라. 세부사업 내용

2. 총사업비 규모

(단위 : 천원)

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	비고

3. 보조금(출연금) 산출내역 : 별첨

4. 분기별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 금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목	계	1/4			2/4				3/4			4/4					
			소계	1	2	3	소계	4	5	6	소계	7	8	9	소계	10	11	12

※ 기타사항

- 예산계상신청을 위하여 3월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기금) 신청서』(붙임①)를 작성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송부하여야 익년도 예산에 반영 함.
- 사업종료 후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붙임②)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정산하여야 함.
 - 붙임①②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고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201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배치인원 : 총 명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지도자배치사업 세부운영계획

사도 및 시·군·구	지도자수	프로그램	종목/횟수	장 소	기 간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계						

[별지 제3호 서식]

2013년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배치인원 : 총 명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지도자배치사업 세부운영계획

시·도 및 시·군·구	지도자수	프로그램	종목/횟수	장 소	기 간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계						

[별지 제4호 서식]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예산집행실적						지도자 수						지도자 변동(명)						지도실적(횟수)						수혜자 수						비고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퇴직	채용	퇴직	채용	퇴직	채용	1월	2월	3월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1월	2월	3월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지도자	지방비				
계																																		
생활체육지도자																																	*당직원 채용인 명시 ex) ○ x구 122일 1명 퇴직 ○ x구 128일 1명 채용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2.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일스포츠강사)

2.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에 대한 스포츠 활동 수요를 충족시켜 학생들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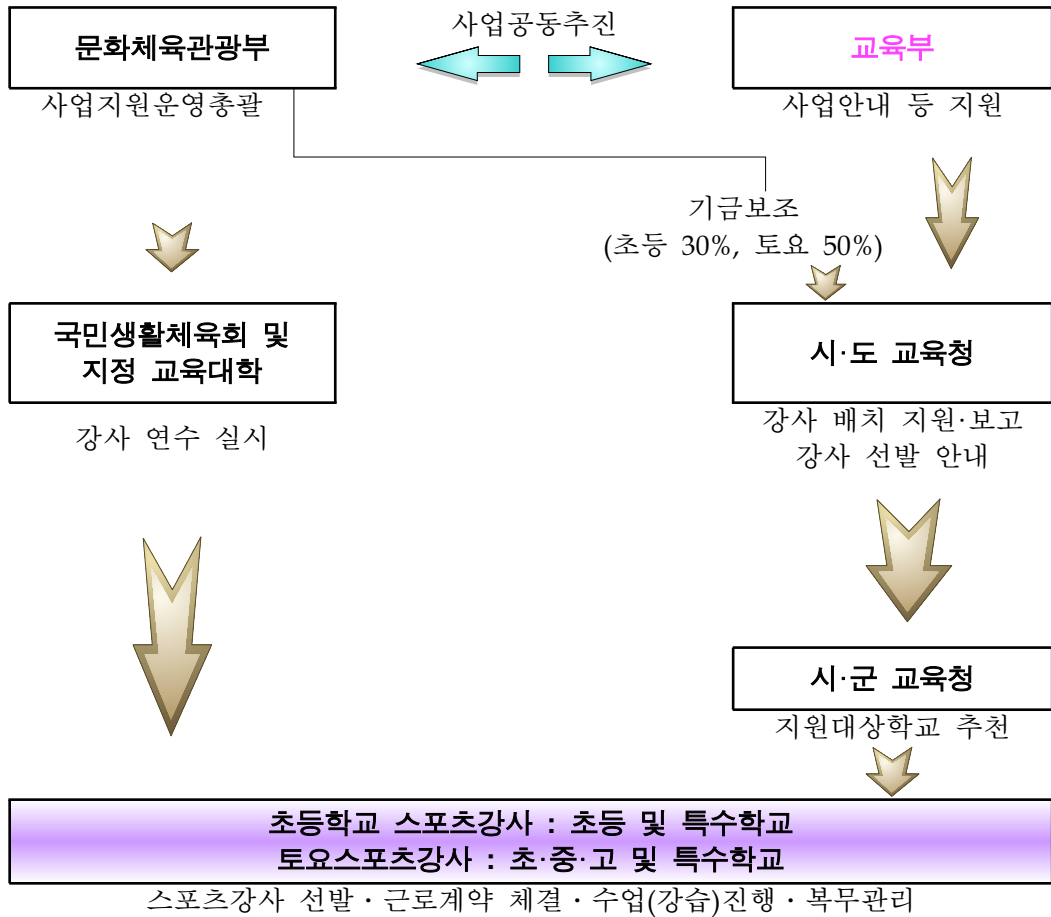
나. 기본방침

- 새 정부의 국가 정책 과제인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기준시수(주당 21시수) 및 스포츠강사 역할(담임교사와 협력 수업) 원칙 준수
 - 체육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수업에 스포츠강사 지원 배제
 - 스포츠강사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역할 강화
- 토요일스포츠강사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스포츠강사 겸임 권장
 - ※ 해당 스포츠강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4대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기지급
 - 스포츠강사가 채용의 자율성 보장
 - ※ 스포츠강사 수당(32주간 토요일 4시간 분량) 범위 내에서 강사 채용
(토요일스포츠강사 1인 4시간, 2인 2시간씩, 4인 1시간씩 등 운영 가능)

2.2 스포츠강사 운영개요

- 사업기간 : '13. 3월 ~ 12월(10개월)
- 사업규모 : (초등) 전국 모든 초등·특수학교 6,053개교
(토요)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11,519개교
- 사업내용 : (초등) 전국 모든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수업 보조 및 방과후 체육활동 지도 실시
(토요)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토요일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일스포츠 강습, 스포츠클럽 지도 실시
- 주 관 : 시·도 교육청
- 예 산(계획)
 - 초등 : 106,884백만원(문화부 32,047백만원, 시도교육청 74,838백만원)
 - 토요 : 39,509백만원(문화부 22,191백만원, 교과부 6,653백만원, 시도교육청 10,683백만원)

2.3 추진체계



2.4 연차별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11	'12	'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516	2,852	6,053
토요일스포츠강사	-	4,789	11,519

2.5 협조사항

- 스포츠강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
- 배치 계획 달성을 위한 시·도교육청 예산확보

3.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3.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가. 추진방향

- 시·도 단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보완 및 협력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 균형 육성
- 지역 내 체육동호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하여 동호인 활동 지원

나. 육성·지원사항

-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단체의 활동
 -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 자치단체사업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는 생활체육단체, 지역장애인 체육회에 위탁
 -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동호인조직 현황 파악, 지역체육문화축제 개최 등
 - 기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체육 관련사업
-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위탁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생활체육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재정 자립능력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 지역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협조사항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시기를 앞당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요망
-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
 - 지역생활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지역별 대학(체육관련 학과, 장애인체육 관련 학과) 등과 협조 체제 구축
 - 지역별 생활체육현장을 실습장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모색

3.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가. 추진기관·단체

- 주 관 :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
- 협조기관 :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나. 주요 사업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생활체육광장 운영
- 장애인체육시설건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체(정보센터) 운영 협조
- 종목별·지역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 종목별 클럽리그 운영
-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 소외계층지원
- 전통스포츠보급
-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생활체육국제교류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개선 보급
- 세계한민족축전

다. 재 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협조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요망
 -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체육시설 사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협조
 - 시정홍보지 등 자치단체 간행물 활용

3.3 시·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가. 운영개요

- 목 적
 - 기초단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 및 행정력 강화로 지역 생활체육 진흥 도모
- 추진방향
 - 제도개선 및 규정 제·개정 등 안정적 사무처 운영기능 강화
 - 지원 후, 사무처 운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성과관리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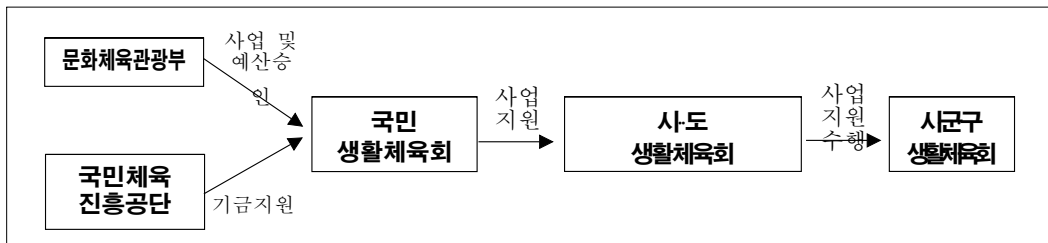
나.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사용 등)
- 지방체육관리지침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2013년도 사업내용

- 지원내역 : 시·군·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760백만원
 - 1,000천원×230개 시·군·구생활체육회×12개월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사업추진절차



마. 협조사항

- 지역 생활체육 거점단체인 시·군·구생활체육회가 자생력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요망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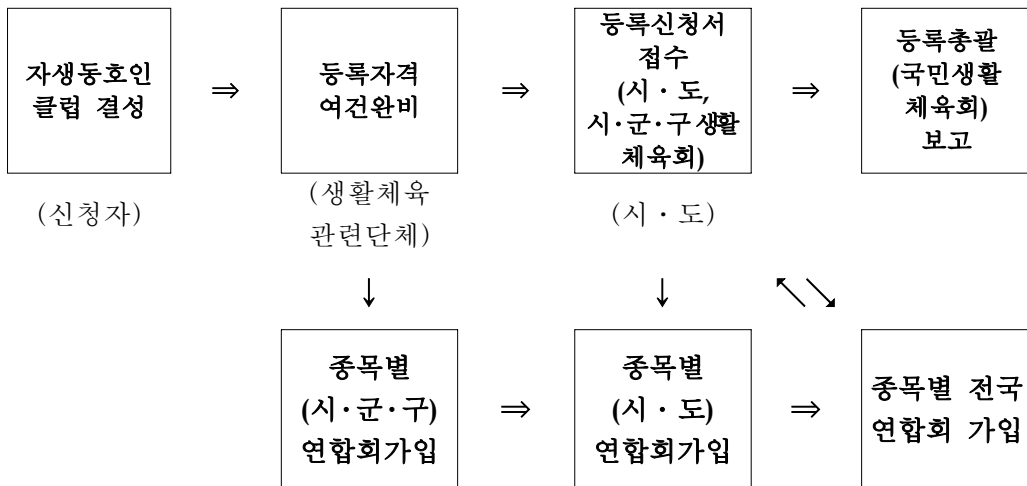
4.1 추진방향

-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동호인 조직결성 확대
 - 동호인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
 -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 기량과 지도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병행 발전 도모
 - 장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참여유도
 - 홍보 강화
 -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 : 종목별·지역별 동호인 연락처, 활동상황 소개, 가입절차 등
 -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반상회,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 등
 - 생활체육활동의 장점과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동호인 조직 결성 의욕 고취
 - 지역 내 장애인클럽, 대회 등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적극 활용
-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육성
 -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체육시설 사용지원
 - 공공체육시설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감면혜택 부여 → 시(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권 부여 등
 - 여건이 성숙된 지역동호인클럽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 지역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활동지원
 - 클럽 간 리그, 자율등록유도, 클럽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우수 체육동호인조직에 관한 포상(장애인 클럽 포함)
 -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
 - 중앙·지방 차원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유도
 - 지역동호인조직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등
 - 생활체육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상을 목적으로 (재)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안전보험에 가입 권장(www.safe.sportal.or.kr)

4.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요건 : 각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인원이 확보되면 가능
(가급적 20인 이상)
- 등록기간 : 연중 수시
- 등록대상 : 각 종목별로 지역 또는 직장에 소속된 생활체육형 조직
- 등록방법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주요활동 장소, 연락처, 구성원 명단 등을 기재, 제출함

< 동호인 클럽 등록 절차 >



4.3 협조사항

- 자생적 동호인조직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단체(지방생활 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간 협조체제 구축
 - 파악대상 :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된 전 종목 대상
 - 담당부서
 - 시·도(생활체육담당과) : 행정업무총괄, 시·도 생활체육단체 지도 및 지원
 - 시·군·구(생활체육담당계) : 현황파악업무, 시·군·구 생활체육단체 지원

5.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스포츠 7330 캠페인>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스포츠 참여 범국민 캠페인

5.1 목적

- 범국가 차원에서의 스포츠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스포츠가 생활화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건강한 국민 여가문화 창출

5.2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 정착 도모
- 스포츠 7330 소 주제인 ‘운동은 밥이다!’ 적극홍보
- 가용한 홍보 전 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 전개(언론보도, 방송 및 인쇄매체 광고, 이동형·옥외·사이버홍보, 가두캠페인 등)
-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되,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

5.3 캠페인 전개 방법

- 시·도별 각종 스포츠 7330 캠페인 공모전 전개
 - 기간 : 연중 수시
 -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 체육의 날(10. 15)전후 활용
 - 공모전 : 사진·포스터 공모전, 수기공모전, 생활체육 사생대회 등
 - 방법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생활체육 공모전 추진(협찬, 후원 등)
 - 별도 행사계획 수립이 곤란할 경우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 시행(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부 등)
 - 지역 유관단체, 생활체육 단체, 지역유명인, 지역 언론사,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생활체육 현장의 소리 반영
- 각종 간행물을 활용한 캠페인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발간물에 캠페인 내용 수록
 - 지역생활체육회 간행물, 팸플릿, 대회요강에 캠페인내용 게재
- 언론매체 투고 및 특강 활성화
 - 독자투고(지역기관장, 생활체육임원·자문교수단), 독자투고(직원 및 동호인), 스포츠 7330 참여사례 발굴·홍보(지역생활체육회)

- 특강실시(생활체육 임원급 및 자문교수단)
 -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주최 행사 및 집회·반상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포츠 7330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학과 강의를 통한 스포츠 7330의 스포츠과학적인 접근(생활체육 자문교수단)
- 정보·통신망 홍보
 - 지역 관공서 및 공공기관 SNS 연계 링크, 양방향 홍보협조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ocosa7330>
 - 블로그 : http://blog.naver.com/sports_7330
 - 트위터 : http://twtkr.com/sports_7330
 - 지역 관공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전화 링고서비스(통화대기 시 스포츠 7330 멘트)
 - 지역생활체육회 대표전화번호 7330으로 변경 권장(ex. 000 - 7330번)
 - 관공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홈페이지에 스포츠 7330 홍보(팝업창, 배너 등)
 - 생활체육 전국대표전화 1566-7330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광판·LED광고 활용협조
 - 시·도 청사 전광판(또는 LED)에 주기적인 스포츠 7330 홍보
 - 각 지역별 지하철 광고판 활용·홍보협조
- 생활체육 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홍보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를 통한 직접홍보
 -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7330 브랜드 파워 강화

5.4 협조사항

- 국민생활체육회 및 각 지역생활체육회가 추진하는 스포츠 7330 캠페인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모든 생활체육 캠페인은 「스포츠 7330 캠페인」으로 일원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6.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

6.1 사업목적

-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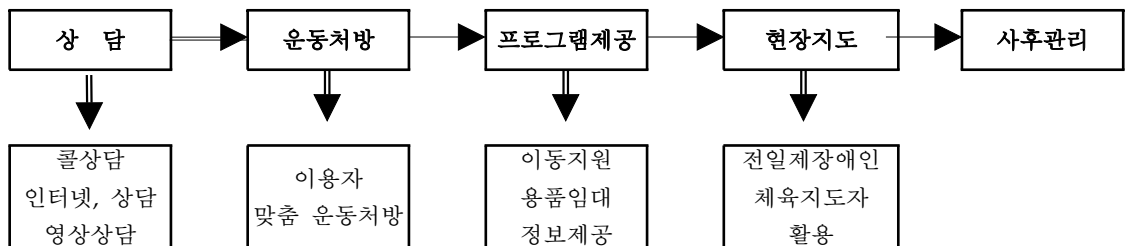
6.2 추진방침

- 장애인의 참여유도를 위해 one-stop 서비스시스템 구축 활용
(상담 ⇒ 현장방문 ⇒ 운동처방 ⇒ 현장지도)
- 생활체육 신규 참가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 내 교실·동호인클럽에 연계
- 체육현장 접근이 어려운 재가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해 병원 및 재활원 등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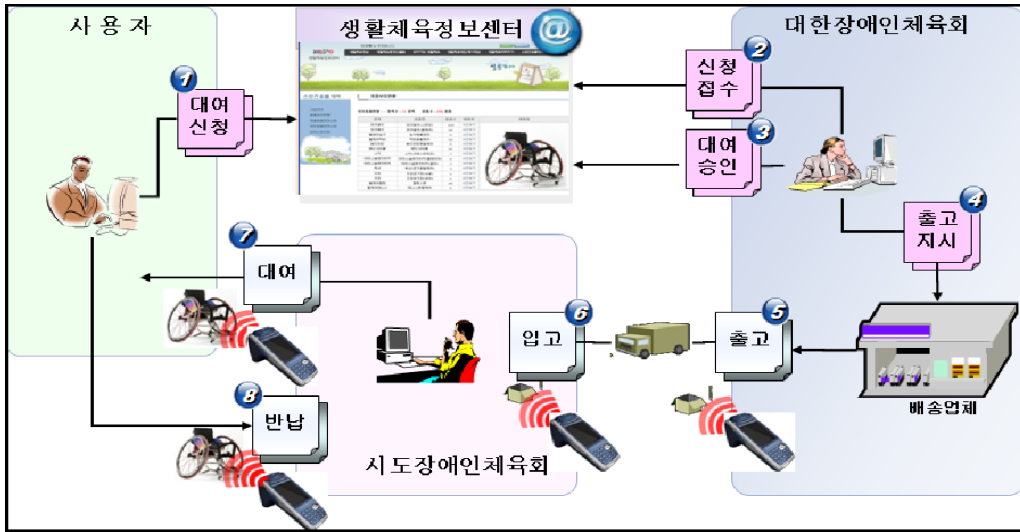
6.3 사업내용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 대표전화(1577-7976)를 통하여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화’ 상담 서비스 제공(‘09년~)
 - 지도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체육활동 지도

6.4 사업추진 절차



6.4-1 장애인스포츠용품 임대절차



6.5 협조사항

-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에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적극 홍보

7.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7.1 행사개요

- 행사기간
 - 체육주간 : 2013. 4. 21(일)~4. 27(토)
 - 체육의 날 : 2013. 10. 15(화)
 - ※ 자체 실정에 따라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전·후 시행
- 실시지역 : 전국 일원
- 실시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각종 체육단체 및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장애인체육단체 등
- 실시방법 : 각 기관·단체·학교 및 직장별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7.2 추진방향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
- 기업체, 민간단체 등 직장의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권장
 -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 등
-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전개

7.3 행사 주요내용

-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 직장·지역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시·군·구 생활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교클럽대항 운동경기 등
 - 건강생활체조, 에어로빅체조,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등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 레크리에이션 활동
 - 직장단위 레크리에이션대회, 야유회, 등산대회 등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 홍보 및 계몽활동
 -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홍보포스터 등)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체육활동의 생활화 캠페인 전개

7.4 시·도별 조치사항

-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추진방향과 주요행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도 및 산하기관과 기업체, 직장, 체육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
-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실시
 - 필요시 민간체육단체와 협조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 권장
 - 시·군·구 단위까지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 매년 체육의 날(10.15)은 전국 각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무료 혹은 할인하여 개방토록 유도
-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체육복지 혜택 부여
- 각 기관별 자체 체육행사 실시 전에 사전 예고(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하고, 행사시 필수인원이 잔류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1 사업개요

- 목적
 - 전국규모 생활체육 행사개최를 통한 행사 참여자들의 명예심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계층 간 우정과 화합 도모 및 국민통합 계기 마련
- 2013년도 대축전 참여 개요
 - 기 간 : 2013. 5.23(목)~5.26(일), 4일간
 -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등
 - 경기종목 : 54개 종목(정식 44, 장애인 8, 시범 2)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 주 관 : 시·도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8.2 추진방향

-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제로 개최
- 방송 및 신문 등 각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확산
- 국제생활체육교류 증진을 위한 한·일 생활체육교류 병행 실시
- 재외동포 초청 행사 병행(5개국 6종목 100여명)
- 장애인 종목 참가선수 선발 및 인솔(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지부)

8.3 협조 및 조치사항

- 시·도별 참가지원 확대 요망
- 장애인 참가에 따른 당해 지자체별 행·재정적 지원요망
- 자치단체장 참석 협조요망

9. 전통스포츠 보급

9.1 사업개요

○ 목 적

- 전통스포츠 강습과 대회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되새기고 전통스포츠 참여활성화 및 저변 인구 확대에 기여

○ 개 요

- 유소년전통놀이 한마당
 - 기 간 : 2013. 3 ~ 12월
 - 대 상 : 5세 이상 유소년
 - 규 모 : 40개소(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 주요내용 : 전통놀이 운동회 및 강습회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 주 관 : 17시·도생활체육회
- 전통스포츠 강습·대회 개최
 - 기 간 : 2013. 3 ~ 12월
 - 대 상 : 청소년시설, 직장 등
 - 강습종목 : 9종목 강습 및 대회
 - *9종목 : 족구, 줄다리기, 궁도, 택견, 국학기공, 국무도, 검도, 씨름, 마상무예
 - 주요내용 : 종목별 전통종목 시·도 순회 강습·보급, 전통교실 운영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강원도생활체육회
- 세계민족궁대축전 개최 : '13 .10월중 6일간, 30개국 200명 초청 국가별 대항경기, 세미나, 일반인 대상 시연회 등
- 족구활성화 : 청소년족구대회 및 여성족구대회 개최

9.2 협조 및 조치사항

- 「2013년도 전통스포츠 대회 및 강습」 확산을 위한 해당 지자체별 행·재정적 지원 요망

10.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장애인/비장애인 통합대회)

10.1 사업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통한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0.2 추진방향

- 경쟁보다는 어울림을 위한 ‘축제’ 형태로 운영
- 지역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대회로 정착
- 지역 및 전국단위 규모 대회 개최

10.3 추진방침

- 지역규모의 어울림대회의 경우, 지방경기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추어 운영·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도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 전국규모의 어울림대회는 공모사업이 원칙이나, 전년도사업 현장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익년도 교부사업으로 전환
- 사업계획 변경 시, 최소 2개월 전 변경 승인 신청·승인 후 사업 시행

10.4 사업내용

-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경기종목별·장애유형별 어울림대회 실시)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장애인-비장애인 경기단체와 연계추진)
- 지역축제 및 지역별 동호인 등과 연계한 어울림생활체육대회

10.5 협조사항

- 각 시·도 : 어울림체육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종목 선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촉구
- 각 시·군·구 :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에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체육행사 마련 적극 추진

11. 체육 유공자 포상

11.1 포상개요

가.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널리 발굴·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생활체육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나. 포상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포상
 -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11.2 대한민국체육상

가.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기여

나. 시상내용

- 시상분야 (7개 분야)

분 야	대 상
경기	각종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연구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공로	체육행정, 재정지원, 생활체육홍보, 국제체육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
진흥	생활체육 현장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 또는 생활체육보급 및 확산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극복상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특수 체육상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양성 및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2007년부터 대한민국체육상에 장애인체육 2개 부문 신설

- 시상인원 : 7명(단체·기업체 포함)

다. 추천기관 및 인원

-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 추천인원 : 기관 또는 단체별 3개 분야 이내(추후 관련문서 별도 시달)
- 추천기한 : 2013. 7. 22(월) ~ 8. 23(금)

라. 심사 및 결정

-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

마. 심사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체육계의 원로로서 시상분야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
 -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직 대한체육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 분과위원장 :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호선
- 각 분과위원회 :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바. 시상일시 : 2013. 10. 15

11.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가.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공헌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체육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발전에 기여

나.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 근거 마련

다. 운 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12. 생활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12.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가. 기본방침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 생활체육 관련 사업 중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도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비 확보

나. 생활체육 예산편성 중점

-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사업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 장애인·여성·노인·농어민 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적극 지원
- 지역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지역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이상, 시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50%이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 이상
 - 시·도 주최 기금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이외 사업은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체사업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사업, 지방체육업무편람에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 2013년도 예산편성

- 시·도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 시도 생활체육회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2. 2013년도 예산집행 및 정산

-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보고

13.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 목 적 >

- 본 업무편람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생활체육관련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허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도지사의 법인업무취급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09.12.31)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고자 함.
- ※ 동 업무편람은 시·도에서 체육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3.1 근거법령

<기본 참고법령>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도지사 재위임 근거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13.3.23)
 - ※ 제4조 (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3.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근거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반드시 공익(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13.3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 기본사항 >

- 법인설립은 동일명칭 사용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재정능력 및 법인운영능력(목적사업수행)에 비중을 두어 허가 검토
- 법인 활동영역의 전문성, 공익성, 사업목적 등을 중점 검토
- 법인의 목적과 명칭이 부합되도록 하고 의료법등 개별법 상의 규제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 불허

가. 공통사항

○ 체육의 범위

- 목적사업이 체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지압, 마사지, 카이로프라틱, 신체교정, 시술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불허

○ 법인설립의 필요성

- 설립목적, 사업실적, 비 영리성, 회원의 규모, 체육진흥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막연한 사업은 지양
- 사업계획, 전문성(관련분야 종사), 과거의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검토
- 시·군·구 지역단위 법인의 경우 주민여가 및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될 생활체육센터는 운영시설, 기본재산, 회원 등을 검토
 - 해당 자치단체장의 운영실태조사서를 첨부
 - 인근주민의 건강의 장 활용여부 고려 등

- 법인의 명칭
 -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연결되어야 함.
 - 전국단위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활동영역에 따른 명칭 사용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법인명칭을 외국어(영어)와 병기하되 정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영어명칭이 기존의 법인체와 달라야 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향후 5개국 이상 해외지역 활동 시는 “국제” 명칭사용 권장
- 기타사항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분야(유흥무도, 카바레 등)는 법인설립 허가 불허
 - 인마살상 우려종목(석궁 등)단체, 유사의료행위 관련단체(각종 활법, 활기도 종목) 등은 허가 불허

나. 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 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하되,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 등의 순수과실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단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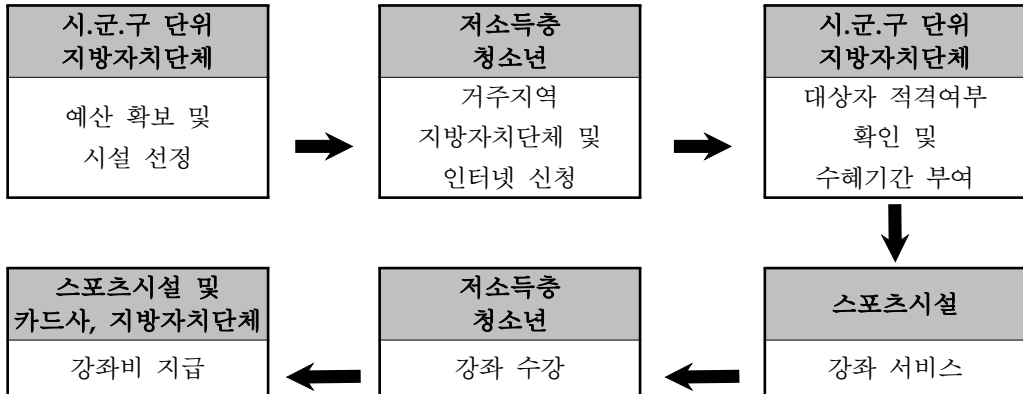
- 사단법인 설립 시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지도
-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므로 구성요인인 사원(회원)에 중점을 두고 사원의 수와 자격, 사업계획, 연회비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비에 의한 경비충당비율,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함
- 사단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일정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확충해 나가도록 권장·지도
- 특정인의 재정지원 등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설립허가 후 퇴직 또는 재정지원 중단으로 법인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4.1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절차

14.1.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흐름도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정 절차



14.1.2 지원대상자 선정

가. 지원대상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内 만5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2013년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나.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다. 선정기준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 선정기준 설정
 -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구

마. 지원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연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시, 지원 가능.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기간 설정 가능**

14.1.3 스포츠시설 선정

-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 ※ 상시 선정 가능
- 선정 검토 요건
 - ※ 수요대비 과다 신청으로 제한하여 선정해야할 경우, **다음 요건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여 선정**

1. 사업자 등록 및 최소 3개월 이상 세금 납부 여부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전성
 - ※ 신청내역의 시설사진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필요
3.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4.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5.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6. 웹 가맹점 등록 여부

14.1.4 저소득 청소년의 신청

-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체육담당과
 -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의 대리신청 가능. 단, 임의대리인은 신청 불가
 - 인터넷 접수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접수기간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간 설정

14.1.5 대상자 적격 확인

- 기금지원시스템과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14.1.6 스포츠시설 선택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확인 가능

14.1.8 스포츠바우처 비용청구 및 자금집행

- 스포츠강좌이용권 비용청구(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와 카드사간 정산)
 - 스포츠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스포츠강좌 카드결제분을 정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자금집행(시·군·구와 카드사간 정산)
 - 시·군·구는 매월 25일 카드사에 전달 결제액 집행

14.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설명회 개최

- 다수의 담당자가 변경된 광역시·도의 경우, 요청 시 사업설명회 개최

14.3 2013년 소요예산 : 10,584백만원(지방비 30% 별도)

- (보조금예산) 바우처 사업비 : 10,584,000,000원

14.4 사업주체별 기능 분담

사업주체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 사업계획 확정과 통보 ○ 유관부처 업무협조 요청 및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작성 ○ 전국단위 사업 홍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광역시·도별 배정 ○ 분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실적관리 ○ 광역시·도 실적 확인 및 독려 ○ 등록 사업자 현장조사 ○ 사업개선 의견 수렴 및 연구 ○ 사업 평가와 환류 ○ 사업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기금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보완 ○ 홈페이지 관리

사업주체	기능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단위 운영 총괄, 예산 배정 및 홍보 - 관할 시·군·구 예산 집행 점검 독려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단위 운영 총괄 - 회원과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지역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 지역 홍보 - 회원 이용금액 지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	○ 회원에게 양질의 스포츠강좌 제공

14.5 2013년 개편 내용 (상반기부터 실시)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지원대상	○만7~19세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5~19세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농촌형지역) 대상자 부족 및 연령 확대 민원 반영 ※ 만5~19세 기초수급자 인원 -'10년 대상 인원 : 36만여명
예산배정 (인센티브 반영)	기초수급자 인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급자 인원 비율(95%) + 집행율(5%) ▶ '12년도 우수집행지역에 배분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사업 가능 지역 제한 없음 ▶의무지역 : 가용시설 5개미만 ▶기타지역 : 의무지역 외 불용 발생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사업 가능 지역 제한 ▶의무지역 : 가용시설 5개이하 ▶대상지역 : 가용시설 30개이하
협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대상을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혜자리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를 차상위계층보다 후순위로 선정 자제 ○ 최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대상자, 장애인은 지원대상자가 본인, 또는 지원자의 부모, 세대주로 한정 ○ 사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화가 되지 않는 최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여부확인 후 관련 서류(대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금 지원시스템에 첨부 	

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1.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1.1. 세부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12예산	'13예산	증감	비 고 ('13예산)
합계		235,101	256,527	21,426	총 457개소(신규 356, 계속 101)
국고예산	일반 1, 광특 1	94,101 (121개소)	116,527 (174개소)	22,426	174개소(신규 118, 계속 56)
일반회계	전국체전시설 건립 - '12년 대구, '13년 인천, '14년 제주, '15년 강원 개최	5,900 (7개소)	13,182 (29개소)	7,282	- 인천 21개(신규 20, 계속1) - 제주 5개(계속 5) - 강원 3개(신규 3) ▪ 시설비의 30% 정률지원
광특회계	1개 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 3개 내역사업	88,201 (114개소)	103,345 (145개소)	15,144	- 신규 95개소, 계속 50개소 ▪ 시설비의 30% 정률
	생활체육공원 조성 - 체육시설 3종목 이상 설치	11,985 (21개소)	10,619 (22개소)	△1,366	- 신규 10, 계속 12개소
	노인 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865 (5개소)	1,820 (6개소)	955	- 신규 5개소, 계속 1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 - 체육관, 운동장, 리모델링 등	75,351 (88개소)	90,906 (117개소)	15,555	- 신규 80, 계속 37개소
체육기금	5개 사업	141,000 (257개소)	140,000 (283개소)	△1,000	283개소(신규 238, 계속 45)
	국민체육센터 건립 - 시·군·구 1개소 확충 목표로 지원 추진 중 * '12년 현재 181개 시·군·구에 192개소 지원 - 국민생활관 15개소 - 국민체육센터 177개소	54,800 (50개소)	51,820 (50개소)	△2,980	실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지원 - 신규 10개소 1차년도 각 2억원(20억원)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시범사업 1개소 10억원 별도 - 계속 40개소 2, 3차년도분 지원(498억원) ▪ 1개소당 30억원 기준 정액지원(재정자립도에 따라 27~33억원 차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잔디, 마사토 등)구장,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농구장 등), 야간조명시설 등	59,500 (170개소)	59,000 (200개소)	△500	- 초·중·고학교 운동장 100개소 - 지자체 운동장 20개소 - 생활야구장 20개소 ▪ 1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 - 지자체 운동장(복합) 10개소 ▪ 1개소당 500백만원 정액지원 - 운동장 개·보수 50개소 ▪ 1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 * 유소년축구센터건립 1개소 30억원 별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 복합건물(커뮤니티센터, 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등), 다목적구장	3,000 (5개소)	3,000 (5개소)		- 특별시·광역시 제외 9개도 시·군의 읍·면지역 ▪ 1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 강당 겸용 또는 전용 체육관	11,700 (22개소)	9,300 (15개소)	△2,400	- 중·대도시 지역 : 5개소 - 소도시·농어촌 지역 : 10개소 ▪ 시설비의 30% 정률지원 - 중·대도시 지역 : 총사업비 3,000백만원 기준(최대 900백만원) - 소도시·농어촌 지역 총사업비 1,600백만원 기준(최대 480백만원) **단, 총사업비 = [기금+지방비](50%)+[교육청](50%) 부담 원칙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 생활체육 관련 실내외 복합시설	12,000 (10개소)	16,880 (13개소)	4,880	- 계속 : 5개소(서울 1, 지방 4) - 신규 : 8개소(지방 8) ▪ 시설비의 50%(서울), 70%(지방) 정률지원

1.2. 2013년도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광특회계	103,345	20,703	33,420	26,411	22,811
일반회계	13,182	2,500	1,598	5,514	3,570
체육기금	140,000	20,000	50,000	50,000	20,000

2. 주요 추진방향

- 가. 정부 재정 조기 집행 및 국고 교부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통한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
-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제고
- 다. 국고보조금(일반회계, 광특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동일 사업에 대한 국비 중복 예산 지원 불가
- 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확대 추진
- 마. 에너지 절감 등 효율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적극 설치(국민체육센터 등)
 -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바.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다중이용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등 프로경기 시설 중심으로 지자체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 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등에 따라 적정 수준 이상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 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균형 배치,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추진
 -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운영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선정·지원 추진
 - 예산의 효율성 도모 및 기존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증축·개축·대수선 등 리모델링 사업 확대
 -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다목적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
 -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은 건립 시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방안 강구
 -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주간·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
 - 국비를 지원받는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 개방

-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로 야간 개방 확대
- 시설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관리 주체 결정
 - 대규모 시설 중 종합운동장 등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되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프로 경기단체 이용 시설의 경우 프로단체에 위탁 관리
 - 소규모 시설 중 게이트볼장, 궁도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설은 생활체육단체에 위탁 관리

3. 공공체육시설 신규확충 및 리모델링

3.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23조(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제26조(보험 가입), 제35조(보조)
- 스포츠산업진흥법
 -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나. 기획재정부 법령

- 국가재정법
 -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 요구서의 제출),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존 보조율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조(정의),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다. 산업통상자원부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라. 안전행정부 법령

- 지방재정법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1조(대부기간)

마. 국토교통부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1조(운동장), 제92조(운동장의 결정기준),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9조(체육시설),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바. 보건복지부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의 강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사. 교육부 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제3조의2(복합시설), 제5조(체육장)

3.2 체육진흥시설 지원

가. 사업 목적

- 건전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실정에 맞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나. 추진방향

- 광역 시·도의 시·군·구 단위에 생활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조성,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 확충

다. 지원내용

- 생활체육공원
 -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 3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 부지면적은 5,000㎡ 이상 확보(단,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중 체육공원으로 추진 시 10,000㎡ 이상), 체육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50% 범위 내에서 설치(단,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자전거공원 내 설치시설 : 자전거 산책로, 체험 광장, X-게임장, 자전거보관소 등

-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노인복지시설 및 녹지 등에 노인 계층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건립, 노인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
 - ※ 주요시설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노인계층 선호 체육시설
- 지방체육시설 지원
 - 운동장, 체육관, 기존 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 기반 및 생활체육 활동 공간 마련,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

라.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

- 지원조건 : 정율 지원(국고 30%, 지방비 70%)
- 부지 매입비 및 초과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마. 2013년도 예산 : 국고 103,345백만원

- 생활체육공원 : 10,619백만원(신규 10개소, 계속 12개소)
- 노인건강체육시설 : 1,820백만원(신규 5개소, 계속 1개소)
- 지방체육시설 : 90,906백만원(신규 80개소, 계속 37개소)

바. 국고예산 편성 및 지원 검토 기준

- 국가에서 부여한 시·도의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예산 신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체육진흥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사업 등은 지원 신청 불가
- 지자체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지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2013년 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 2회계년도 이상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이월하는 집행이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3.3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가. 개 요

- 목 적
 -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기반 조성으로 지방체육 진흥 기여
- 추진방향
 - 최소 예산의 경기장시설 사업비 투자로 전국체육대회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 조성
-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조건 : 정율 지원(국고 30%, 지방비 70%)
 - 부지 매입비 및 초과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나. 2013년도 예산(국고) : 13,182백만원

다. 지원대상

-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미 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등

라. 국고예산 편성 및 지원 검토기준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 체육대회 개최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
- 시·도의 신청에 의하여 미보유 및 규격미달 등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대회 종료 이후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
 - * 전국체전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는 광특회계 사업으로도 추진 가능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지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신규 사업은 2013년 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실정,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 추진
-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 건립 시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 방안 강구
-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이미 공인되어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 체육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평상시 장애인 체육활동 및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3.4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3.4.1 국민체육센터 지원

가. 개 요

○ 목 적

-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인근에 수영장 또는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실내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전국 1개 시·군·구에 1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원칙
- 2013년부터 국민생활관 지원지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추가 지원
- 수영장 기본형 등 3개 지원모델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1개 모델을 선택하여 건립 지원

【지원모델】

수영장 기본형	⇒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연면적 2,161㎡)
다목적 체육관형	⇒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1,867㎡)
체육관 복합형	⇒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4,029㎡)

나. 2013년도 예산 : 52,820백만원

- 지원내역 : 신규 10개소 20억원, 계속 56개소 498억원, 장애인형(제주) 10억원
- 지원금액 : 기금 27억원 ~ 40억원 내 지원(1개소당 지원 기준금액)
 -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27~40억원), 국민생활관 지원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27~33억원)
- 재원
 - 건 설 : 기금지원금 외에 추가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부 지 : 지방자치단체 자체 확보(기금 사용 불가)

다. 지원대상 : 기초 지자체(이미 지원받은 시·군·구는 지원 불가)

라. 기금지원 기준

- 예산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기금 지원
 - 설계완료 후 5%(설계비), 착공 후 45%, 공사공정 50% 이후 50% 지원

- 시·도의 시·군·구 사업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위원회 심사 후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 부지 확보,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된 지역으로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수영장 건립 시 1레인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친화형 시설 및 복합문화 시설로 공간구성 권장
 - 아이 돌봄 시설(놀이시설 및 보호인력 배치), 장애인 편의시설, 작은 도서관 등 설치 권장

마. 추진 시 유의사항

-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금사업 지원계획은 시·도를 통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알림에 게재
- 전문체육시설 규모의 시설(50m레인 수영장)은 지원 불가하며, 설계 시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전 협의(동의) 필요

3.4.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의 운동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 지자체 추천 후 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나. 2013년도 예산 : 59,000백만원

- 지원금액
 - 학교(초·중·고), 지자체 운동장 및 생활야구장 : 1개소당 기금 3.5억원 지원
 - 복합운동장 : 1개소당 기금 5억원 지원
 - 운동장 개·보수 : 1개소당 기금 1억원 지원
- 지원내역
 - 운동장 : 학교(초·중·고) 100개소 / 지자체·대학 등 30개소
 - 생활야구장 : 지자체·대학 등 20개소
 - 복합운동장 : 지자체·대학 등 10개소
 - 운동장 개·보수 : 학교(초·중·고), 지자체 등 50개소

다.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대학교, 지자체

라. 기금지원 기준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및 야간조명시설 의무 설치

마. 사업내용

-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조명시설 및 기타 운동장의 부대 체육시설 등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의 신규 조성 및 개·보수
- 야간조명시설은 LED 등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며, 운동장 인근 주택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 유지

바. 추진 시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에 공지
- 기금 수령 후 별도 계정 및 계좌 관리

3.4.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 목 적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지자체 추천 후 선정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나. 2013년도 예산 : 3,000백만원

- 지원내역 : 5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6억원(추가 사업비는 지자체 부담)

다. 지원대상 : 지자체 읍·면 중 체육시설 소외지역(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미 보유 지역)

라. 기금지원 기준

- 부지 및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 우선 지원

마. 사업내용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A형, B형, C형 등 3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
 - 시설세부내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주요시설 : 실내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아쿠아센터, 문화실 등

바. 추진시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에 게재

3.4.4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가. 개 요

- 목 적
 - 학교 부지를 활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이용
- 추진방향
 - '13년~'17년까지 100개소 건립 지원(교육부와의 공동 사업)

나. 2013년도 예산 : 9,300백만원

- 지원내역 : 15개소(중·대도시 5개소, 소도시·농촌지역 10개소)
- 지원기준 : 정율 지원[기금 30%, 지방비 + 교육청 70%]
- 기준사업비 : 1개소 당 총사업비 기준액(기초 지자체 인구 30만명 기준, 중·대도시 30억원, 소도시·농촌지역 16억원)
 - 중·대도시 지원한도 : 900백만원(총사업비의 30% 범위 내 지원)
 - 소도시·농촌지역 지원한도 : 480백만원(총사업비의 30% 범위 내 지원)
- 지원조건 : 기금, 지방비, 교육청 예산 공동투자 사업으로 추진

다. 사업내용

- 전용(정규)체육관
 - 농구, 배구 등 체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내체육관(바닥면적 600㎡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나머지(600㎡미만, 천장높이 6m 미만)는 간이체육실에 포함

- 강당(겸용)체육관
 - 평상시에는 체육활동, 행사시(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에는 강당형태로 사용>(* 강당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추진 시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에 공지

3.4.5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가. 개 요

- 목 적
 - 국민들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참여 및 관심 급증에 따른 관련 시설 확충 지원으로, 레저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일반 민간이 추진할 수 없는 공공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지원
 -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레저스포츠시설 종목 중 생활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
 - 자전거도로, 걷기 및 조깅로, 대중골프시설 등은 제외

나. 2013년도 예산 : 50억원

- 지원내역 : 50억원
- 지원금액 : 각 시설별 5억원(지자체 50%이상 부담)

다. 추진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시·도로부터 신청 받아 시·도별로 '13년 예산범위(50억원) 내에서 선정할 예정
- 기금 지원 잔액 및 이자 정산 반납
- 기금 수령 후 별도 계정 및 계좌 관리를 요함

라. 사후관리

- 매년 시·도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비 반영, 집행
- 체육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시설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정기점검 실시

3.5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장애인생활체육 참가율을 2012년 10.6%까지 확대
-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

나. 공공체육시설 현황

- 공공체육시설 : 17,157개소('12년말 기준)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9) 이후 건립된 체육시설은 접근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은 구비하였으나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미흡 →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한계
- ※ 설치의무 적용시기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0.4.11부터 적용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2.4.11부터 적용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5.4.11부터 적용

다. 문제점

- 대부분의 공공체육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부재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저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국고지원 곤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
 - 자치단체에서 광특회계 편성가능(지자체 관심 저조)
- 전국체전 시설의 경우 대부분 편의시설을 가설시설로 설치한 후 대회종료 후 제거(예산낭비)

라. 시·도 협조사항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협조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16개 시·도별 적정 설치율이 48.9%로 조사됨. 편의시설 미흡기관 조치 협조 필요
 - *2012년 30만 이상~5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적정 설치율 조사(대한장애인체육회)
- 광특 회계 편성 시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 편성토록 협조
- 전국체전 개최 시·도로 선정 되었을 시 장애인체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체전 후에도 활용가능한 시설로 건립

- 향후, 전국체전 개최도시 선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가점 조항에 포함할 예정
-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인천	제주	강원

-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붙임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대상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3조 관련)
-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붙임1 >

장애인편의시설 세부기준

□ 체육시설 필수 장애인편의시설 개요

- 시설까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접근로 확보
- 각 체육시설 출입구의 턱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통로 공간 확보
- 경사로 및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 화장실: 층마다 1개의 장애인화장실 필요(대변기, 소면기, 세면대, 여닫이문)
- 장애인 전용주차장 필요
- 수영장: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입수시설(입수 경사로), 입수용 휠체어
- 헬스장: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헬스기구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체육관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관람석
- 안내설비 : 점자판, 시각·청각 경보 설비, 안내데스크에 휠체어 구비, 안내데스크 하부 공간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 세부 기준

○ 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 상 사항	건물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상,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3°) 이하로 완화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배수로 등에 덮개 설치시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cm 이하로 설치
	가로등, 전주, 간판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 연석이나 울타리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 가능하도록 질감 달리 설치
	건물 내 보행자 접근보도 별도 설치
	안전보행 통로는 차도와 다른 질감 혹은 색감으로 마감
	시설 내 전동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대여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높이 차이 제거/유효 폭은 1.2m 이상일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3.3m이상×5.0m 이상으로 설치 (단, 평행주차의 경우 2m이상×6m 이상)
	바닥면에 장애인전용 표시(장애인표지가 우측을 향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
권장사항	주차 후 안전통로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곳(혹은 가능하도록)에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1m 안전지대 표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뒤쪽에 안내 표지 부착 또는 설치

③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3cm 이하로 설치
	출입구 단차가 있는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④ 주출입문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문틀 미포함)은 80cm 이상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활동공간) 1.2m 이상으로 설치
	회전문이 있는 경우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출입문 설치
	주출입문 30cm 전면에 접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설치
권장사항	출입문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유리문의 1.2m~1.4m 높이에 색띠 설치
	여닫이문은 앞뒤로 열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설치

○ 내부시설

① 각실 출입구(문) 및 각실 내부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문틀 미포함)은 80cm 이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설치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도록 설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문지방이나 홈이 없도록 설치
	자동문의 개방시간 확보 및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감지범위 넓게 설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80~90cm 사이에 오도록 설치하되 레버형 또는 막대형으로 설치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인 방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권장사항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60c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시설 내부 벽면에 손잡이 설치
	시설 내부 계단코는 디딤판과 보색으로 설치

② 내부 복도 및 통로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복도의 유효폭이 1.2m 이상(양옆에 거실이 있으면 1.5m이상)
	바닥면에 높이차이 제거(높이차이가 있으면 경사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30c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다르게 설치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하에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권장사항	복도측면에는 손잡이 연속설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이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벽과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복도에 거울이나 화분 등의 장애물 설치 여부

③ 내부계단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계단 및 침의 유효폭은 1.2m 이상(옥외파난계단은 90cm 이상 가능)
	계단에는 철크면을 반드시 설치(철크면의 높이는 18c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크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설치
	계단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 30cm의 수평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접자표지판 부착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
	계단코에 줄눈넣기 또는 경질고무류의 미끄럼방지제로 마감(단, 바닥표면 전체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일 경우 제외)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다르게 설치	
권장사항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계단 측면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④ 내부승강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유효바닥면적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문틀 미포함) 80cm 이상으로 설치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1.2m 이하로 설치(스위치가 많은 경우 1.4m 이하까지 완화)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바닥면으로부터 85cm 내외 높이에 설치(단,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에 설치가능)
	조작반·통화장치에 접자표지판 부착
	승강기 내부에 수평손잡이를 연속 또는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각 층마다 승강기 도착여부 표시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내부에 도착층 및 운행상황 표시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승강기 전면 ×)	
권장사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중 최소 한대는 전층 운행

⑤ 내부 경사로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단, 1.2m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90cm 까지 완화)
	바닥면으로부터 75cm 이내마다 수평 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로 설치(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는 1/8까지 완화)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 경사로 양측에 손잡이 연속 설치
	경사로 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cm 이상 연장 설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로 설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권장사항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경사로 양 측면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반드시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
	경사로 굴절부분에 수평 참 설치

○ 위생시설

① 화장실 일반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출입구(문) 및 바닥에 높이차이 없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출입구(문) 혹은 출입구 30c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설치
	출입구(문) 옆에 남녀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의 출입문 혹은 출입구 폭은 80cm 이상
권장사항	남녀 화장실에 각각 장애인용 대변기 칸을 설치하고, 가족용 기능의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

② 대변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로 설치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폭은 80cm 이상
	여단이문인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내부공간이 1.4m×1.4m 이상인 경우 안쪽 개폐 가능)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설치
	대변기의 한쪽에는 반드시 수평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0.6~0.7m에 설치(반대쪽 수평손잡이는 회전형으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벽측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
	대변기 중심에서 벽측 손잡이까지의 거리는 0.35~0.4m
	세정장치·휴지걸이의 위치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대변기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권장사항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 측면접근을 위한 75cm 이상 공간 확보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m×1.4m 이상의 공간 확보
	대변기칸 출입문의 형태는 미단이문 또는 접이문
	대변기 양쪽 손잡이간의 간격은 70cm 내외로 설치
	변기의 뚜껑 혹은 등받이 등을 반드시 설치
	대변기 칸막이 안에 초소형 세면기의 설치(휠체어 접근 및 회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③ 소변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소변기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55cm 내외로 설치
	소변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cm 내외 (단,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용 소변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 소변기가 설치된 장소

④ 세면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세면기 상단의 높이는 85cm 이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하부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65cm 이상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기
	세면기 앞에 설치되는 거울은 경사 혹은 전면거울로 설치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해 세면대 양 옆에 수평손잡이 설치(휠체어 접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수도꼭지는 센서형 혹은 레버형으로 설치

○ 안내시설

① 점자블록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점자블록의 표준형 크기는 30cm×30cm 이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이 표준형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이 표준형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
	주출입구 접근로(대지경계에서부터 주출입구가 있는 곳까지)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점자블록 설치
권장사항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안전보행통로에 설치
	실내에서의 안내는 주출입문에서부터 점자축지도 및 안내소까지만 선형블록으로 유도

② 유도·안내시설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 등을 간략하게 표시
	주요시설 및 방 배치안내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장치 설치
	청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가능하도록 시각 경보설비를 설치
	시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가능하도록 청각 경보설비를 설치
권장사항	일반안내도가 있는 경우 점자 병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 설치

○ 기타시설: 접수대·안내대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 확보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70cm 이상, 90cm 이하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 확보

4.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집행지침

4.1 예산 조기 집행

- 2013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최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실집행률을 강화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재정지출 보조지표로 설정, 관리·공개 예정
 -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 선교부는 가능하나, 2012년도 동 규정을 적용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
 -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공사발주 공고, 사업자 선정, 설계,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

4.2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주요재정사업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집행담당자 실명 공개 추진
 - 재정정보시스템과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개
-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 시 이자 반환 명확화 및 이월 제한
 - 일반회계(전국체전시설), 기금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 및 수익금(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보조사업 정산 이후 발생이자 반환(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399~402 참고)
- 2010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이월기한을 2회계연도로 제한

4.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5.1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가. 추진방향

- 노후한 운동장·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활용도 증대 도모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및 이용 확대
 - 야간개방 등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문화행사·집회 등 지역 내 주민 화합 및 주민 복지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
 -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주간·야간 상시 개방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운동장, 체육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
 - 지역주민 의견수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사전에 시행,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
- ※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나.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수립 >

- 체육시설의 수요예측 및 공급기준 제시
 - 국고 및 기금지원 체육시설의 새로운 유형 발굴 제시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계획 수립 시 일관성 확보 필요
- ※ 향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추진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지원 >

- 인구 편중, 프로스포츠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별·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4대 권역별 별도 평가, 장애인 및 여성 특화시설 평가 등 다양한 우수 시설을 선정·지원
 -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기관은 해외 선진시설 탐방 예정

< 공공체육시설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

- 공공체육시설 이용 국민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 중
-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및 시스템 상에서의 입력 적극 협조

<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 노후화된 경기장 개보수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한시적(2010~2014년)으로 지원
- 20년 이상 경과된 실내 500석, 실외 1,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한시조항 삭제 및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주민 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기존 운동장,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추진
-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동시 추진

<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

- 정부에서 지원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야간에도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 교체 등을 대비하여 수익금의 일부 기금 적립)
- 시설 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 방향 전환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조명시설에 자동제어기 설치, LED 조명 설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마련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지자체 및 체육계의 자발적 참여

5.2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가. 추진방향

-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가입 등의 안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운영

나. 안전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추진
-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일시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프로경기 개최 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추진
-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하여 안전에 유의
-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부서 합동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체육시설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공사 중인 시설 및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주요사항
 - 화재발생 시 대처 기능(비상대피, 소화장비, 인화물질 등) 점검
 - 체육시설물 관리요원 교육,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확인
 - 소방법, 건축법 등 각종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적정 여부 점검
 - 유관기관 간 긴급 연락체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확인

5.3 공공체육시설 이용관련 사항

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사용 기회 부여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생활체육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임대되어 있어 그 사용이 해당 단체에 독점되어 일반 주민들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관련 생활체육단체와의 위탁계약 시 동 사항을 명기하고 지도 감독을 통하여 주민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이용료 할인 등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근거
- 지방조례 또는 학교 사용료 규칙의 개정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들이 공공체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가능토록 조치요망

다.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 정부에서 지원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일반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야간에도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시설 의무설치)
-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 교체 등을 대비하여 수익금의 일부 기금 적립)

5.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

- 대상시설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 국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 ※ 장애인 편의내용 : 장애인 체육 용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제공 등
 -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시행령 제16조 제2항, 별표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6.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

< '13년 업무 추진 >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고보조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별도의 업무 관련 지침없이 '2013년도 지방체육 업무편람'에 따라 추진(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별도로 통보하는 지원계획 및 지침에 따라 추진)
- '1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14년 예산계상 신청 >

- 체육진흥시설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자전거공원 등),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
-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 운동장·체육관 등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로서 실내시설 500석 이상, 실외시설 1,000석 이상) 리모델링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이후 지방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한 이후 수익금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원
- 전국체전시설 건립
 - 기존 미 보유 또는 규격미달 등 경기장 시설 위주로 지원
 - 이미 결정된 개최지역 제주('14년)·강원('15년)·충남('16년)은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 협의 추진(통상 3개년 분할 지원)
 - ※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대한체육회) 이전에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계획 사전 협의한 이후 유치 신청(미 협의시 지원 불가 원칙)
- '14년 예산편성 검토 기준
 - 부지 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여부 등 사업의 정상 추진(예산 집행) 가능성 여부를 중점 검토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편성 시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요구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 부지의 확보
 - 해당 시설 부지매입비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
 - 보조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한하며, 부지 매입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 불가
-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재정투융자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절차는 예산편성 신청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비의 국고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시행연도 본예산에 기준보조율 이상의 지방비 확보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보조율(30%)을 준수하여 지방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 보다 많이 대응 투자하여야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사후활용, 주민여론 등의 제반 여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설계 시에는 사후 관리와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 다용도·다목적으로 설계하는 등 적절한 생활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새로이 건립할 때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방안 적극 추진
-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반영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반영(주차장,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 등)
 - (육아)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화장실, 샤워실, 유아 놀이방, 아이돌봄 시설, 수유실 등)
-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 체육시설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 행정사항 >

- 2012년까지 지원사업(준공보고서 제출 및 실적확인 사업은 제외) 및 2013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현황 등 추진현황 월별 제출
 - 2013. 2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국고 집행현황 등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실적보고서(준공보고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재해복구사업 포함) 종료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

- 체육진흥시설(광특회계)

- 준공보고서 제출하여 사업 실적을 확인된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다른 광특회계 사업(지역개발계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제출

- 전국체전시설(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수익금) 및 생활체육시설(국민체육진흥기금)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부에 보고하여야 함(단,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1개월을 초과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이자 전액 반납)에는 발생이자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 생활체육공원 및 노인건강체육시설

-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보조율을 50% 적용(2010년부터 30%)

- 지방체육시설

-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보조율을 50% 적용(2009년부터 30%)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자료제출 대상 : 기 지원 국고보조사업)

○ 시·도(총괄)

(2012. 12. 31 현재)

국고 보조 년도 (년차)	사업명	시설규모 (㎡)	사업비 투자 실적 및 계획(백만원)	사 업 추 진 현 황					사업추진 부진사유						
				행정행위	부지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일 (예 정)	사업진도	준공 예정일	착공까지 지연사유	착공이후 지연사유	대 책			
○○년도 (○년차)	○○시 (○군) ○○건설	○ 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 경기장 면적 ○ 관람석 면적 ○ 기타주 요사항	□ 총사업비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일 도시계획 결정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일:	계획: ㎡	용역의뢰일 : 완료일:		%	*현 공정 - - -				행정행위 - 부지확보 - 사업내용 -		
			○ 부지매입비 :		확보: ㎡									확보율: %	완료(예정)일:
			○ 시설비:		년도									국비	지방비
			소계												
			'10 까지												

※ 사업명은 국고보조년도 순으로 작성/ 시설규모는 운동장은 부지면적, 경기장규격, 건축면적, 관중석수 등을 기재,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은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규격, 관중석수를 기재, 생활체육공원은 부지면적, 주요 체육시설명과 각 시설별 개소수(또는 면수)·규격(또는 폭·길이)을 나열하여 기재

※ 자료는 횡으로 양식 변경하여 제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0 .00 월~200 .00 월
- 총사업비 : 00,000백만원
 - 시설사업비 : 00,000 백만원(국고 0,000, 지방비 00,000)
 - 부지매입비(별도) 0,000 백만원
- 시설규모
 - 부지 00,000m², 연면적 00,000m², 체육시설(경기장) 면적 00,000m²
- 시설내용
 - 축구장 1면 0,000m²(105×68m), 농구장 1면 000m²(28×15m), 족구장 2면 0,000m²(000×00m), 테니스장 4면 0,000m²(000×00m), 주차장, 관리실 등
- 집행현황(예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시·군·구 기준)							
연도별	국 고 지원액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계		계							
		국비							
		지방비							
'10까지		계							
		국비							
		지방비							
'11		계							
		국비							
		지방비							
'12		계							
		국비							
		지방비							
'13		계							
		국비							
		지방비							
'14이후		계							
		국비							
		지방비							

□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비 고
						기 확보	향후 확보		
계									
국 비									
지방비									

□ 추진 현황 및 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도시계획시설 결정('08.12 월)
- 지방재정투자심사('08. 4 월) : ○○도 심사(조건부 : 국비 확보후 추진)
- 부지 매입 완료('08.12 월)
- 설계 용역 시행('09.2~9 월) 및 건설기술 심의('09. 10 월)
- 공사 계약('10.11) 및 공사 착공('10. 12 월)
- 골조공사 완료('12.12 월)
- 현, 마감공사 중('13. 10 월 현재 기준) : 공정률 96%
- 공사 준공(예정)('14. 11 월)
- 사업 실적보고서(준공보고서) 제출(예정)(2014.12 월)

□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부진사유

-

-

* 2회계연도 이상 이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작성

○ 향후 대책

-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시 대책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준공(사업 실적) 보고서

(문서분류기호)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

년 월 일

발신 : ○○시·도지사

○○○○공사(사업)의 준공(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예 산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 행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행내역	구 분		설 계 금 액		집 행 금 액	
	도 급 액		원		원	
	관 급 액		원		원	
	계		원		원	
사업기간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p>(현황사진)</p> <p style="font-size: 2em;">사 진</p> <p style="font-size: 1.5em;">(5"×7")</p>						

○ 사업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구성			년차별 투자액					비고
		부지 매입비	시설 공사비	기타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시설 이력

최초 착공일	최초 준공일	증·개축 및 주요 보수 현황				비고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년 월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립 당시와 리모델링 구분될 수 있도록 비고란 표기

○ 시설관리 인력현황

시설관리장 직위 및 직급	시설관리인원 (명)					비고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	

건립사업비 집행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		집 행 액		비 고
	월일	금액	월일	금액	
합 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지급자재					
기 타					

작성자 :

확인자 :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주체 :
- 사업기간 : 00 년 00월 ~ 00년 00월
- 사 업 비 : 000천원(국비 000, 시·도비 000, 시·군·구비 000)
- 재해복구 사업내용 :

2. 사업추진현황

- 공사계약 : 000천원(00년 00월 00일)
- 공사착공 : 00년 00월 / 현 공정(%)
- 공사준공(예정) 시기 : 00년 00월

3.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타	계					
합	계					

※ 비고란에 이월사항 기재

○ 부진사유

-

4. 향후 추진계획

-
-

[별지 제8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개요

목 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지출증빙서류 및 재해복구(공사전, 공사후 구분) 사진 별도 제출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재해복구 사업비 집행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		집 행 액		비 고
	월일	금액	월일	금액	
합 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지급자재					
기 타					

※ 사진(공사 전,후) 반드시 첨부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9호 서식]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m², 건축면적(연면적) m²(m²)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국고 000, 지방비 000, 기타 000)
- 시설내용
 - 경기장 규격 :
 - 주요시설 :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재원	'11까지	'12년도	'13년도	'14년이후
총액					
① 시설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도비 • 시군구비 • 기타					
② 부지매입비					

※ 지방비 : '13년 본예산 확정액 기재(추경예산 확보 계획은 별도로 표시)

□ 추진현황 및 계획

- 부지확보시기(면적) : 00년 00월(m²)
- 기본설계 시행 : 00년 00월 ~ 00년 00월
- 실시설계 시행 : 00년 00월 ~ 00년 00월
- 착공 시기 : 00년 00월
- 공사 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관리계획 변경), 문화재조사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등 자세히 기재 요망

□ 2013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예정시기 : 0월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사업구분 (계속·신규)	사 업 비			2013년도 재원계획				2013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 방 비		
							본예산	추 경	
<p>○사업목적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p> <p>○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p> <p style="padding-left: 40px;">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 본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당해 신청하는 시·군의 사업을 총괄하여 작성
- *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전국체전시설 건립(일반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회계)로 구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함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명 :
2. 국고보조년도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2013. . . 현재기준)

사전 행정절차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확보	최초착공	사업진도	준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 년 월 일 완료예정	년 월 일	% *현공정내용	년 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5. 시설규모(운동장·체육관 등 개별 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중석	주요 부대시설
m ²	연 m ²	m ²			m ² 석 (명)	

5-1. 시설규모(생활체육공원 등 집단적 시설의 경우, 시설종류 수정 제출)

부지면적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 종류 및 면적·규격								주요 부대시설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 턴장	게이트 볼장	테니스 장	기타 시설		
m ²	연 m ²	m ² 식	m ² 면	m ² 면	m ² 면	m ² 면	m ² 면	m ² 면	m ² 식.면	

5-2. 시설규모(리모델링의 경우)

【기존시설 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중석	주요 부대시설
m ²	연 m ²	m ²			m ² 석 (명)	

【리모델링 내역】

구분	기존	추가	변경	비고

6. 재원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투 자 계 획			보조금 교부신청	
		계	'11까지	'12	계	'13	'14이후	신청액	소요시기
합 계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 도 비									
· 시군비									
- 교부세									
② 부지매입비									

※ 2013년도 지방비 예산서 사본 첨부

7. 공정별 투자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사업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비 고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①설계비						
②감리비						
③시설부대비						
④도급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등						
⑤관급공사비						

8. 부지확보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확 보 대 상		확 보 실 적		확 보 계 획		비 고 (완료시기 등)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무상확보							
유상확보							

※ 무상 확보시, 배경, 협의실적 및 부지 소유형태 :

- 첨부 1. 2013년도 예산서 사본 및 이월예산 1부.(별도 첨부)
 2.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1부.
 3. 사업추진일정 1부.
 4. 사진 각 1매(5×7인치 : 시설부지 사진, 조감도, 공사 중인 사진 등)

부지 확보 추진 현황 및 계획

구 분	매 입 면 적 (㎡)				소 요 액 (백만원)			
	계	'12까지	2013계획	2014이후	계	'12까지	2013계획	2014이후
유상확보								
무상확보								
계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계획수립단계에서 기록하되 부지위치 선정·보상감정·지가책정·협의취득 등 추진단계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

2. 향후 추진계획(세부일정 명시)

※ 부지가 기 확보될 경우 본 서식 생략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 추진현황

- 2012년도 말까지(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사업 추진계획

- 2013년도 상반기(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2013년도 하반기(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2014년도 이후 (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부지확보 여부, 설계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1. 부진 사유(계속사업의 경우)

2. 향후대책

3. 장기계획 사유(계속·신규사업으로 4년 이상 추진할 것으로 계획한 경우)

지방비 확보 계획(확약)서

□ 사업비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2년까지 확보	'13년확보	'13년확보 예정	'14년이후 확보	비 고
국 고						
지방비						

□ 지방비 확보계획

- 2013년 (제1회)추경 확보 예정
 - 추경예정일 : 2013년 00월
 - 확보예정액 : 백만원
-
-
-

□ 확약사항

- 우리 시(군,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미확보된 예산 000백만원은 2013년 0월 제0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2013년 말까지 지방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회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2014년도 체육진흥시설 내역사업 설명자료

1. 사업개요

- 사업명 :
- 필요성 :
-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m²(평), 건축연면적 m²(평)
- 사업기간 :
- 시행주체 :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주요시설(사업내용)
 - * 경기장 규격, 관람석 면적(관람석 수, 수용인원), 주요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리모델링 등의 경우,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사항 등 기재

2. 그동안 추진경과

-
-
-
- *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공사발주, 착·준공시기, 공정률 등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3. 향후 추진계획

-
-

4. 201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물량	2014년도 예산(안)				비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보상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이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6. 국고보조금 실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 실제 보조사업자 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비고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유 :
- 향후대책 :

7. 세부검토기준 : 붙임

8. 현황 사진 및 도면(위치도, 배치도 등) : 별첨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세부검토기준

(절차적·내용적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문화재조사(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 등), 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여부 등		
	라. 부지 확보 *미확보 시 향후 확보 시기, 면적, 소요 금액 등 기재		
	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심사 일시 및 승인 내용(조건부 승인시 조건 내용)		
	다.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기준보조율 충족 여부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 시기, 주요내용 및 결과 등		
	나. 주변 체육시설 현황 분석 * 인근 유사 체육시설 분포 현황(시·군·구 범위 및 반경 2km 이내)		
	다. 체육시설 수급 분석 *지역주민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등 실시 결과, 설문조사 등		
	라. 향후 관리·운영방안 *인력 및 조직, 운영(직영 또는 위탁 등), 효율적 관리 방안 등 제시		

※ 부지 확보(토지대장)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등 행정절차 이행의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기타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2014년도 전국체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2014년 예산(안)			우선 순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계속사업	소 계							
신규사업	소 계							

2014년도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사업 단위별 총괄표

시·도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구	시설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13년까지 예산			'14년예산			'15년도 이후 예산			인구 (천명)	우선 순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개소															
계속 사업	소계	개소															
신규 사업	소계	개소															

※ 사업 우선 순위 반드시 기재(황으로 작성)

단 위 사 업 명

1. 사업구분 : 신규 또는 계속사업(국고지원 여부로 판단)

2. 사업개요

가. 사업자의 주소·성명 :

다. 사업장의 위치 :

나.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라. 사업기간 :

3. 사업계획

가. 시설내용(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요 부대시설
m ²	연 m ²	m ²			m ² 석 (명)	

※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알기쉽게 변경 가능

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재 원	투자실적		투자계획		비 고
		'12까지	'13년도	'14년도	'15년 이후	
총 계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 도 비 • 시군구비 • 기타						
② 부지매입비						

다. 부지확보

○ 시·군유지 확보·국유지 임대사용 등의 경우

확 보 면 적	확 보 시 기	확보배경 및 형태
m ²		

라. 지방재정사업 투융자심사 심의

사 업 명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비 고

※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서 사본 첨부 필수

- 조건부일 경우 조건부 충족에 관한 방안(계획서) 반드시 첨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요약서 첨부 등

마. 시설사업비의 공종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소요액	투자실적		투자계획		비 고
		2012까지	2013	2014	2015이후	
계						
① 설계비						
② 감리비						
③ 시설부대비						
④ 도급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등						
⑤ 관급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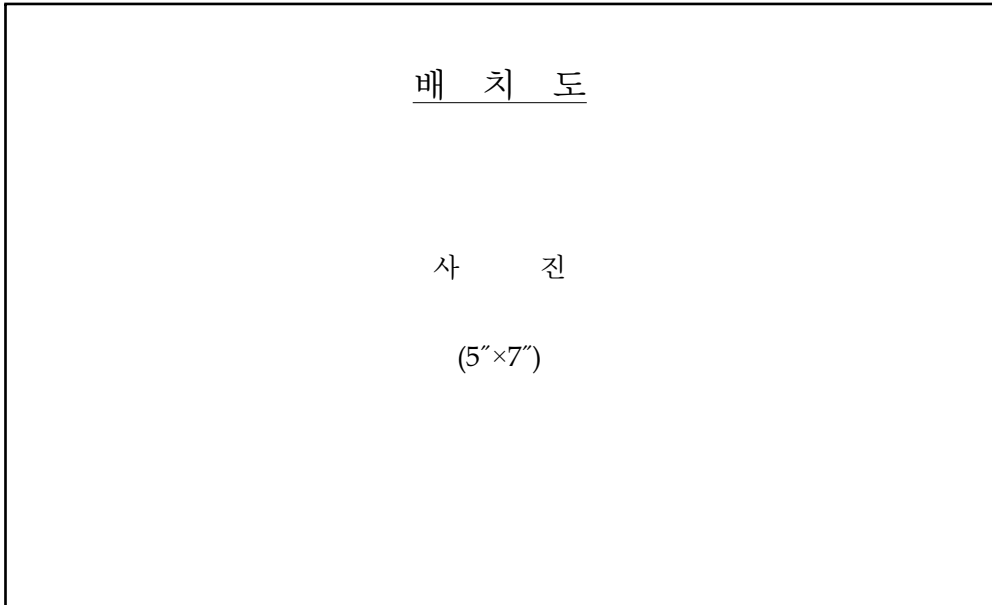
바. 사업추진계획 : 각종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환경성검토, 문화재조사 등 포함)

- 1) 도시계획시설결정일 :
- 2) 기본설계 기간 :
- 3) 실시설계 기간 :
- 4) 공사 착공 시기 :
- 5) 공사 준공 시기 :

사. 시설물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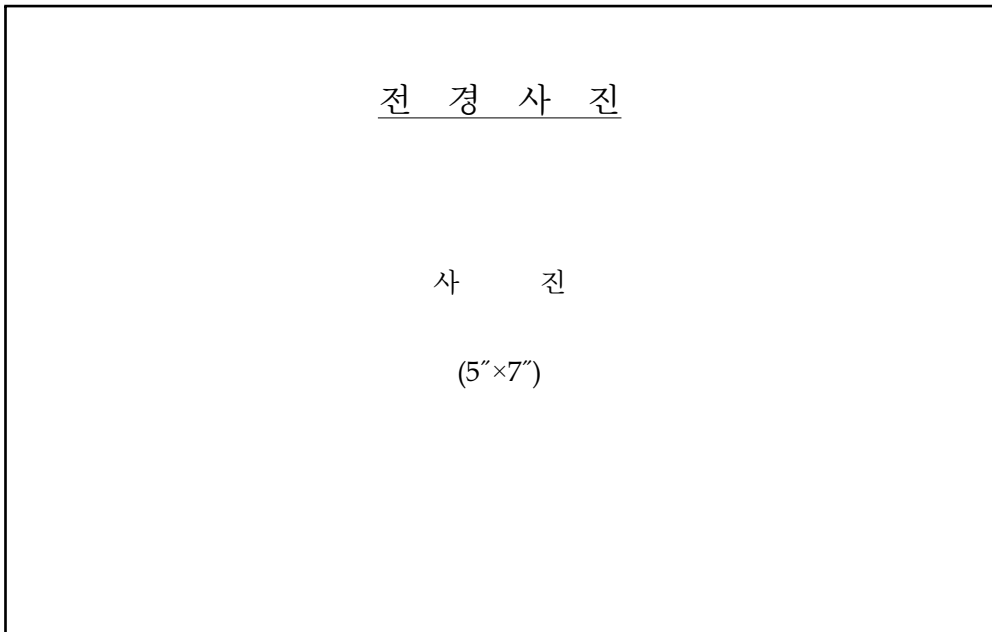
구 분	완공후 운영프로그램	운영형태	비 고
시 설 명	○ 시설별, 실별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 기재	직영, 위탁 (시설별, 실별)	

아. 위 치 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쉽게 표기하여 제출

자. 전 경 사 진(부지)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Ⅲ. 직장체육진흥

1. 직장체육의 활성화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가. 체육주간, 체육의 날

-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 관공서의 경우 가급적 지정된 기간 중에 직장 체육행사 실시로 참여 분위기 조성
- 체육의 날에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무료개방, 일일생활체육교실 개설·운영 적극 검토

나. 직장체육대회 개최

-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의 실시 권장
 - 직장체육활동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을 기업주에게 고취
- 상시 근무 직장인 1,000인 이상의 국가기관·공공기관(단체)는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를 개최 하여야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 제5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정에 따라 운동경기와 생활·민속체육행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실시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대상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등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미설치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운동경기부 설치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상시 근무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여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관련)

1.3 행정사항

- 직장체육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보고(1, 4번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2, 3, 5번 서식은 시·도 자체관리)

분류기호 및 (진화번호 :) 2013. . .

문서번호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목 : 직장체육현황 보고

1. 직장체육현황 총괄표

시. 군. 구 별	구분 규모별	직장수	직원수	직장체육진흥 관리위원회		체육동호인조직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체육대회 실시	
				설치 직장 수	운영 회수 (연)	설치 직장 수	인원	생활체육지도자 1급 2급 3급 계	인원	인원	경기지도자 1급 2급	설치 직장 수	종류	수량	설치 직장 수	실시 회수 (연)	
	1,000인 이상 국가 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소계																
	1,000인 이상 국가 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소계																
	1,000인 이상 국가 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계																

※ 유의사항 : 단, 체육시설(설치직장수, 종류, 수량)의 현황작성은 상시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2. 직장별 현황

구분 시·도별	직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체육업무담당)	영업종류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체육동호인조직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체육대회 실시	
					설치 여부	운영 회수	인원	생활체육지도자 1급 2급 3급	계	실치 직장 수	팀수	인원 계	선수	지도자	1급 2급	경기지도자	종류	수	실시 회수 (연)	실시종목
합	계																			

3. 직장체육동호인 조직현황

직장규모별	종목별	직장명	조직수	인원	횟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비고
						1급	2급	3급	계	
1,000인 이상 국가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축구 테니스 등산 남시 · · ·									
계										

4.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

직장명	종목별	선수 수			임원				지도자 배치				비고	
		남	여	계	단장	감독	코치	계	1급	2급	3급	계		
	육상													
	축구													
	테니스													
	연식정구													
	.													
	.													
	.													
	.													
	계													

5. 직장체육시설 현황

○ 시·도명

시.군.구	구분 규모별	직장현황			합계		체 육 시 설 설 치 종 목											
		전체 직장 수 ①	보유 직장 수 ②	보유 율 (%) ②/①	개소	면적	탁구	테니스	체력단련	운동장	간이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케이트볼	기타	
○ 시 ○ 군 ○ 구	합계																	
	500인이상 가기관·공공 기관·공공단체																	
	합계																	
○ 시 ○ 군 ○ 구	500인이상 가기관·공공 기관·공공단체																	
	합계																	
	500인이상 가기관·공공 기관·공공단체																	

<작성기준>

1. 탁구장 : 탁구경기 및 연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실내경기장
2. 테니스장 : 단, 복식테니스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코트를 갖춘 실외시설
3.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 미용체조, 맨체스트, 폼피트니스, 격투기 등 다양한 실내용 시설 및 헬스, 평행봉, 폼피트니스, 에어로빅, 미용체조, 맨체스트, 격투기 등을 갖춘 실외시설
4. 운동장 : 가로 90~120m, 세로 45~90m 규격의 축구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운동장
5. 간이구장 : 배구, 농구, 축구 등 연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간이운동장
6. 배드민턴 : 배드민턴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실외시설
7. 체육관 : 농구, 배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의 경기나 연습이 가능한 체육관
8. 수영장 : 수영장, 풀장 등 명칭불구, 수영경기 및 연습, 기타 물놀이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실내·외시설
9. 야구장 : 별도의 야구장을 갖추고 야구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실외시설
10. 케이트볼장 : 케이트볼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코트를 갖춘 실외시설
11. 기타시설 : 상기 예시된 종목외의 체육시설
(예 : 씨름, 궁도, 태권도, 불링, 당구, 사격장, 유도 등)

IV. 전문체육 육성

1. 전국체육대회

1.1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전국체육대회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 형성과 스포츠 보급 확산
-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접목 실시로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나. 대회개요

- 기 간 : 2013. 10. 18(목)~10. 24(수) (7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 경기종목 : 44개 정식종목, 3개 시범종목
- 참가규모 : 30,000여명(임원 5,000여명, 선수 25,000여명)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 지원예산액 : 5,773백만원(체육진흥기금)
 - 대회 운영비 : 3,5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도훈련비 등 : 2,273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민간경상 보조)
- * 시설유지 및 보수 별도
-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실시 및 학술세미나 개최
-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18 조 (유치신청) ① 전국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 지부는 적어도 대회개최 5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염출방법
4.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 시·도 지부는 일정액의 유치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금은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잔액은 개최지로 탈락한 시도지부에 우선 균등 배분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본회 이사회가 결정 승인한다.

②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 지부는 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회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현황

연 도	대 회 명	개최지	비 고
2013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인 천	
2014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제 주	
2015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강 원	
2016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충 남	
2017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충 북	

2.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자라나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정신을 고취시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나. 대회개요

- 기 간 : 2013. 5. 25(토)~5. 28(화), (4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일원
- 경기종목 : 초등부 17종목, 중등부 33종목
- 참가규모 : 17,000여명(임원 5,000여명, 선수 12,000여명)

다. 대회운영비 지원현황

- 지원예산액 : 7,97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 6,290백만원(훈련비 및 경기단체 개최 지원)
 - 대한체육회 : 1,680백만원(출전비, 대회운영)

라. 협조사항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1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지방 장애인체육의 확대와 시·도별 균형적 발전 도모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신인선수 발굴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방 체육환경 기반구축
-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대국민 홍보

나. 대회개요

- 대회기간 : 2013. 9. 30(월)~10.4(금), 5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일원
- 경기종목 : 27개 종목(정식26, 전시1)
- 참가규모 : 7,000여명(선수 5,000여명, 임원 및 보호자 2,000여명)
- 참가대상 : 만 16세 이상 장애인
- 참가영역 :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 지원예산액 : 256,240천원(기금)
-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시종목 실시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 개최지의 경기장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사용 협조

3.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개최시도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 시작
- 2006년 제26회 대회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개최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구 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 반 체 전	전북 (제84회)	충북 (제85회)	울산 (제86회)	김천 (제87회)	광주 (제88회)	전남 (제89회)	대전 (제90회)	경남 (제91회)	경기 (제92회)	대구 (제93회)
장애인 체 전	충남 (제23회)	전북 (제24회)	충북 (제25회)	울산 (제26회)	김천 (제27회)	광주 (제28회)	전남 (제29회)	대전 (제30회)	경남 (제31회)	경기 (제32회)

다. 향후 개최지 현황

* 2015년부터 전국체전과 동일지역에서 개최

구분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주최)
일 반 체 전	인천 (제94회)	제주 (제95회)	강원 (제96회)	충남 (제97회)	충북 (제98회)	대한체육회
장애인 체 전	대구 (제33회)	인천 (제34회)	강원 (제35회)	충남 (제36회)	충북 (제37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2014년 일반체전을 개최하는 시·도는 '장애인체전'을 개최하지 않음

3.3 201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청소년들의 장애극복 의지와 사회적응력 신장
- 장애청소년들의 재활 의욕고취 및 생활체육의 기틀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

나. 대회개요

- 대회기간 : 2013. 5. 11(토)~5. 14(화), 4일간
-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일원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교육청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참가규모 : 총 3,000여명(예정)
- 경기종목 : 15개 종목(예정)
- 장애분과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 참가자격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다. 협조사항

- 학기 중 학생들의 대회 참여 협조(교육과학기술부)
- 대회기간 중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문화체육교류프로그램 시행
- 개최지의 경기장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사용 협조

V. 스포츠산업 육성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가. 목 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스포츠산업 분야 인력양성의 전문화 및 수준 제고

나. 추진방향

- 지자체와 협력하여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공동협력 구축(지방비 지원, 인력양성계획 수립, 취업, 사후 프로그램 연계 등)
- 스포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에 진출을 원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지원
- 스포츠산업 현장에 적응성 강한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를 활용한 이론과 실무 병행 교육
- 스포츠를 타분야와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양성
 - 스포츠와 이벤트, 미디어, 관광, 건강 등
 - 신종 레저스포츠의 발달 등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수요 대처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동명대(부산·경남), 호남대(광주·전남), 목포대(전남), 대구대(대구·경북), 단국대(충남)
 - 선정경위 : '09년도(단국대는 '10년) 일반 공모로 지정
 - 사업내용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 스포츠마케터, 스포츠관광, 스포츠이벤트 관리자, 스포츠시설 관리자, 골프장 경영 관리자 등 지역별 교육과정 개설
 - 기관별 2개 과정, 1개 과정 당 40명 이상 기준, 전문가의 현장 중심형 교육 시행
- ※ '12년도 10개 과정 524명 수료

라. 지원예산

- 285백만원 (‘12년 운영성과에 따라 기관별 53~63백만원 차등 지원)

마. 협조사항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인 대학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방비 부담분(지자체 50% 정을 보조) 확보

2. 제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가. 목 적

-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지자체 발굴·시상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인식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나. 포상내용

-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한 기업체, 프로구단, 지자체에 대해 시상
- 훈격 및 부상 내역

분 야	상 장	상 금	분 야	상 장	상 금
대 상(1)	대통령 표창	10백만원	프로경기단상(1)	문화부장관표창	5백만원
최우수상(1)	국무총리 표창	7백만원	우수 지자체상(1)	문화부장관표창	5백만원
우수상(3)	문화부장관표창	5백만원	장려상(2)	공단이사장상	3백만원

* 6월 공고, 7~8월 신청접수, 심사·선정, 11월말 시상

다. 시상일시 : 2013. 11월말(예정)

라. 협조사항

- 광역별 1개 시·군·구 선정 신청, 광역단체 신청 지양

3. 스포츠산업진흥 포럼 개최

가. 목 적

- 스포츠산업 정책 제안·건의·토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나. 사업내용

- 지자체 포럼 1회, 국제 포럼 2회, 일반 주제별 포럼 8회 실시
 - 지자체 포럼은 해당 지역의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전문가 토론 추진
 - 국제 포럼은 국제 스포츠산업 동향 및 동반 발전방향 논의(2월, 10월)
 - 일반 포럼은 스포츠산업 관련 주제를 정해 주제발표 및 토론
- 일정 : 2월~12월 월 1회 실시
- 주관 :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다. 협조사항

- 지자체 포럼 개최를 원하는 지역은 사전 협의 요청 및 포럼 개최 시 담당 공무원 참석 요망

4. 스포츠관광 및 스포츠이벤트의 내실화

○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및 이벤트의 유치 및 추진 지원

-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준비
 - 2016년까지 F1코리아그랑프리 성공 운영
- 경기장, 회의시설, 숙박시설을 연계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 유치
-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시 국내 스포츠마케팅사 활용

○ 국내 스포츠 경기대회 및 이벤트의 육성 및 내실화

-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경기대회 및 프로스포츠 활용
-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개발·육성
 - 테니스(제천), 사이클(상주), 조정(충주), 레저(춘천) 등
- 시설과 훈련을 동반할 수 있는 팀을 육성, 전지훈련 유치
- 육성 종목을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 및 행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마련

VI.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강화

1. 목 적

- 약물로부터 선수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 함양
- 선수와 함께하는 깨끗한 스포츠 한국 이미지 정립

2. 도핑검사 개요

- 도핑검사를 통한 도핑의 적발, 저지 및 예방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조화되고 조정된 효과적인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한다는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검사국제표준 제2장 「검사표준」에 의거, 세계 각국의 도핑방지기구(NADO)의 핵심과제
- 도핑검사 배분계획 수립
 - 각 종목, 세부종목별 경기기간중 검사 및 경기기간외 검사별로 검사 자원을 배분하기 위함

□ 2013년 도핑검사 계획 (총 2,846건 내외)

구분	대 회 명	기 간	장 소	건 수	비고
경기 기간 중	제1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2.28~3.2	전북	15	
	제94회 전국동계체전	2.14~17	전북, 서울	70	
	제42회 전국소년체전	5.26~29	경기	60	
	제33회 전국장애인체전	10.22~26	경기	80	
	제94회 전국체전	10.11~17	인천	400	
	프로종목 아마선수	2~10	전국	50	EPO10,h GH30
	종목별 전국대회	연중	전국일원	405	hGH20
계				1,080	
경기 기간 외	동계합숙훈련(후보)	1~2월, 12월	전국일원	195	
	하계합숙훈련(후보)	7~8월	전국일원	195	
	종합국제대회 파견선수	1~12월	전국일원	886	EPO10, hGH10
	종별 국제대회 파견선수	1~12월	전국일원	100	
	전국체전사전검사	1~12월	전국일원	100	
	고위험종목 우수선수	1~12월	전국일원	120	
	RTP선수(국가대표선수)	1~12월	전국일원	170	ABP120
계				1,766	
합계					
				2,846	

3. 도핑방지 교육 개요

□ 도핑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포츠 정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제2장 「교육 및 연구」에 의거, 세계 각국의 도핑방지기구(NADO)의 공통 핵심 과제

□ 도핑방지 교육의 기본 원칙 및 주요 목표

- 도핑방지 교육을 통해 도핑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포츠 정신 보존
- 사전 예방을 통해 선수들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고의적으로 또는 비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 도핑방지 교육 활동계획 수립

가. 체육 중·고등학생 및 국제대회 출전선수를 위한 자체교육, 후보선수 교육을 위한 도핑검사 교육 중 교육 일정을 교육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나. 각 경기단체 교육요청 공문 접수를 통해 교육일정의 중복 및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외부요청교육 실시

□ 연간 도핑방지 교육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수지원요원	2,399	3,618	5,015	5,500	5,441
선수	1,914	2,239	2,563	2,600	1,813
대학생	50	551	215	250	850
중고생	3,479	1,961	2,858	3,200	3,880
프로	590	530	410	450	1,128
기타	250	395	0	0	0
합계	8,682	9,294	11,061	12,000	13,112

□ 2013년 도핑방지 교육 계획

구 분	일 시	대 상	인 원
자체계획	6월	체육중·고교학생선수 및 지도자	· 중학생 980명 · 고등학생 2,590명 · 지도자 170명
	7월 ~ 12월	일반 초·중·고교 소속 운동부 지도교사	720명
	4월 ~ 7월	국가대표 출전선수	1,230명
	1월 ~ 2월 7월 ~ 8월	국가대표 후보선수	· 후보선수 동계 460명 · 후보선수 하계 550명
	1월 ~ 12월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150명
	11월 <세미나>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시·도지부, 종목별 협회, 관련 단체의 도핑방지 담당자	150명
외부요청	1월 ~ 12월	감독, 코치, 심판, 협회 직원 및 프로단체 요청교육	6,000명

4. 도핑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도핑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포츠 정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제2장 「교육 및 연구」에 의거, 세계 각국의 도핑방지기구(NADO)의 공통핵심 과제

도핑방지 홍보의 기본 원칙 및 주요 목표

- 도핑방지 홍보를 통해 선수 및 기타 관계자들의 선택에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성 및 스포츠 정신 증진

2013년도 도핑방지 홍보 계획

구분	배포수량	배포처
'13 도핑방지기이드북	40,000부	· 16개 시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
도핑방지 홍보만화 발간	15,000부	· 55개 강단체 및 28개 장애인강단체 등
국제표준 발간	800부	· 전국학교 및 기타 관련단체 등
홍보포스터 제작	1,000부	· 각종 세미나, 강습회 교육용
도핑방지 리플렛	1,000부	· 도핑방지 현장홍보 부스 운영 시 배포
검사대상지등록명부(RIP) 및 선수대상안내 KT 제작	500부	· 전국 종합경기 대회 시 배포
치료목적사용면책 안내자료 제작	1회	

도핑방지 홍보 활성화

구분	방안
효율적 홍보 시스템 구축	· 도핑 금지약물 검색 시스템 운영 · 스포츠 매거진 등 일반 매체에 도핑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기고를 통한 홍보 · 각 협회 정기간행물을 활용한 도핑방지 홍보
홍보물 제작 활용 및 효과 제고	· 도핑방지 가이드북 제작 활용 · 청소년들의 빠른 습득을 돕기 위해 도핑방지 만화책 활용 · 리플렛, ECO BAG, 수건, 양말 등 제작·활용

○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시스템 운영

- 선수 및 관계자에게 국내에 시판되는 의약품에 어떤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지약물 검색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선수 및 관계자들의 잦은 방문을 통한 자동적 도핑방지 인식 제고
- 대한민국 의료보건의료전문인의 의약정보 웹사이트(KIMS ONLINE),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약물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받아 출시되는 제품 전체(약47,000여종)를 다루고 있으며 월1회 새로 출시되는 제품(약200건)의 UPDATE가 이루어지고 있음(식약청 승인 수입약품 포함)

5. 도핑방지 국제 교류

□ WADA 등 국제반도핑기구 활동 참여 확대

- WADA 등 국제기구본부 진출을 위한 회의 및 행사 적극 참석

국제회의	일자 (장소)	회의내용
'13 JADA TUE 세미나 참가	1월 (일본)	WADA규약 및 금지목록의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TUE 실행방법 및 ABP, 스테로이드 프로파일 관리 방안 협의
UKAD 워크샵 참가	1월 (영국)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2012 런던올림픽 도핑검사추진 및 IOC와 조직위원회간의 협업 노하우 습득
WADA 2013 IF&NADO 도핑방지 심포지움 참가	3월 (스위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IF 및 NADO와의 업무협의 및 MOU 체결 추진
제10차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정부간회의 참가	3월 (몰디브)	본부 위원(분과위원회·전문가그룹) 파견 전략 모색 및 WADA 이사국 진출 지지요청 활동
2013 WADA 이사회 및 집행이사회 참가	11월 (캐나다)	2014년도 WADA 예산 및 사업방향 논의 (이사국 선출시 참가)

□ 아시아국 도핑검사관 양성지원(2013. 4월 개최 예정)

-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 현장연수 등 시행

※ 교육내용 : 국제표준에 따른 도핑검사 기법 : 이론 및 실기 6시간

현장연수 : 국제대회 도핑검사 시료채취 현장 참관

6.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사항

-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시 주경기장 도핑상황실 및 각
경기장별 도핑검사실 설치·확보
- 각 시도별 선수·지도자 대상 스포츠세미나·연수회·강습회 등에 도핑방지
교육일정 확보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강사 파견

VII. 행정 사항

1 지방체육업무편람의 적용범위

가.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 제 1 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업무편람에 의함.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2.1 지방비 확보

가. 목 적

- 지방체육 관련사업의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예산(안) 국회 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월중)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예산 교부
-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보고

- 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년도 종료 후 보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보고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예산 신청 및 집행

가.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국민체육진흥공단)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 시·도(시·군·구) 사업 : 시·도(시·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단체 사업 : 해당 체육단체(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사업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지침을 별도 시달할 예정임

3. 행사 시행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체육 관련단체들이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을 비롯한 기타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가.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및 제4조(지방체육진흥계획)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항
 -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목 적

- 국민의 다양한 체육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력 향상 및 정서함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체육행정의 효율성 추구
- 실적 분석·평가로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

다.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 세부업무편람에 따라 시·군·구 실적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라.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제출

-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세부업무지침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가. 목 적

- 체육행정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
-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행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방 침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 실시
- 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교육은 특강, 전문분야 강의, 시설견학 및 분임활동 등으로 전문교육의 효과 제고

다. 사업개요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시 기 : 2013년 상반기(체육정책핵심역량과정), 하반기(공공스포츠시설 핵심역량과정)
- 기 간 : 5일간(비합숙)
- 장 소 : 올림픽파크텔(예정)
- 인 원 : 각 과정당 50명(예정)
- 대 상
 - 체육행정공무원 전문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시·군·구 포함)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 시·도(시·군·구 포함)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라. 행정사항

- 교육기간, 시·도별 교육인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 업무지침 시달

6. 「2012 체육백서」 발간

가. 발간 개요

- 백서명 : 「2012 체육백서」
- 백서규격 : 국판, 500쪽 내외
- 발행부수 : 1,500부
- 백서활용 :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도서관 등 배포 활용
- 수록범위 : 2012. 12월까지 체육진흥정책 성과 및 발전 방향·과제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 2013. 4. 1~5. 15
 - 원고 수정 : 2013. 5. 15~5. 31
 - 수정 보완 : 2013. 6. 1~6. 30
 - 발간 배포 : 2013. 7. 1~7. 31

나.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 지방 체육 예산·조직 등 백서 자료 제출 협조

〈참 고 사 항〉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한 업무편람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을 고지함.

2013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3년 4월 인쇄

2013년 4월 발행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편 집 : 체육국 체육정책과(02-3704-9812)

체육정책과	과장	진 재 수
체육정책과	서기관	정 태 경
체육정책과	주무관	김 봉 주
체육진흥과	주무관	이 체 은
국제체육과	주무관	이 시 내
장애인문화체육과	주무관	정 상 만

인 쇄 : (주)계문사

(Tel :02-725-5216)
